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 . . . (제 회)	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
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, 산업통상자원부, 질병관리청, 고용노동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집행적 업무 및 지역적 사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한편,

환경부장관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하여 수행하던 사무 중 일부를 근거법령의 개정 등으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⑧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 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

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”를 “제18조제1항제10호 · 제13호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6제1항 및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30조제2항제1호 · 제32조의2 · 제33조제1항제3호나목”으로, “증명하는”을 “증명 또는 확인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 · 제23조제1항제2호나목”으로, “증명하는”을 “증명 또는 확인하는”으로 한다.

다.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중유
제3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질병관리청장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영리법인(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

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 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 지도·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

제38조제1항제9호가목 중 “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”을 “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”으로 한다.

제3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호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이 호에서 “영”이라 한다)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의 다음 각 목의 사항
- 가.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
 - 나. 영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교육부 소관) ① ~ ⑥ (생략) ⑦ 삭제 <u><신 설></u>	제22조(교육부 소관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<u>⑧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.</u>
제35조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 1. 삭제 2. (생략) 3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제32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<u>증명하는 서류의 발행</u>	제35조(산업통상자원부 소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제18조제1항제10호·제13호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1조의6제1항 및 「개별소비세법시행령」 제30조제2항제1호·제32조의2·제33조제1항제3호나 목-----</u> <u>증명 또는 확인하는 -----</u>

가.·나. (생 략)

<신 설>

4.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」
제1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
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
따라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를
면제받는 석유화학공업용 원
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증명하
는 서류의 발행

② (생 략)

제36조의2(질병관리청 소관) ①·

② (생 략)

<신 설>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
료로 사용하는 중유

4. -----
----- 같은 법
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·제
23조제1항제2호나목-----

----- 증명
또는 확인하는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2(질병관리청 소관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질병관리청장은 「민법」 제
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
하려는 질병관리청장 소관의 비
영리법인(비영리법인의 활동범
위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
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
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
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의
설립허가 및 그 취소, 정관변경
허가, 해산신고의 수리, 그 밖의
지도·감독의 권한을 특별시장

	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.
제38조(환경부 소관)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.	제38조(환경부 소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삭 제	
2. ~ 8. (생 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(이하 이 호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	9. ----- ----- -----
가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중 <u>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</u> 에 따른 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	가. ----- ----- <u>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</u> - ----- ----- ---
나.·다. (생 략)	나.·다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9조(고용노동부 소관)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. 다만, 제4호 본문에 따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	제39조(고용노동부 소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

위임한다.

1. ~ 5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
법률」(이하 이 호에서 “법”이
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
(이하 이 호에서 “령”이라 한
다)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
의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법 제8조에 따른 과태료
의 부과·징수

나. 영 제6조에 따른 안전보
건교육에 관한 사항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4